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

[시행 2016. 1. 1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179호, 2015. 10. 20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혈액장기정책과), 044-202-2631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과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)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(이하 "조직가격 "이라 한다)은 「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.
- 제3조(조직가격의 산정방법) ① 조직가격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"치료재료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"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4조(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)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
 - 1.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.
 - 2.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.
- 제5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<개정 2012. 12. 28., 2015. 10. 20.>

부칙 <제2015-179호,2015.10.20.>

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